

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2013.2.22.]
개정 2015. 1. 1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전공 3과목 이상으로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②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③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주임교수가 위촉한다.

④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⑤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⑥불합격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제5조(외국어능력기준) ①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논문을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상응하게 적용할 수 있다.(개정 2015.1.1.)

1. TOEIC 700이상, TOEFL (PBT530이상, CBT197이상, IBT71이상), TEPS572이상, TOEIC Speaking 110이상, OPIcIM2이상, IELTS6.5 이상 (신설 2015.1.1.)

2.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(신설 2015.1.1.)

②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(신설 2015.1.1.)

제6조(논문지도위원회,논문계획및예비발표) ①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5.1.1.)

②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3학기 개강 30일 이내 지도교수는 지도교수포함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(신설 2015.1.1.)

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(신설 2015.1.1.)

④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(신설 2015.1.1.)

제7조(학술지게재의무조건)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인정환산율 70%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논문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만 인정한다.(개정 2015.1.1.)

2. 학술지는 학술단체, 국내·외 대학(학과 및 부설기관 포함), 연구소, 재단,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, 학술논문만을 게재하고 소정의 심사와 수정을 거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.

3. 게재예정증명서(심사통과확정분)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4. 인정환산율 70%이상 ㄱ.1인단독 100% ㄴ.2인공동 제1저자70%, 그 외의 경우30% ㄷ.3인공동 제1저자50%, 그 외의 경우25%, ㄹ.4인공동이상 제1저자30%, 그 외의 경우 20%(신설 2015.1.1.)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5.01.01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8학년도 이후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세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여 외국어 능력 기준을 면제하고 논문지도위원회를 따두지 아니하나,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외의 경우 개정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특허학과경과조치) 이 세칙은 특허학과 소속에게도 같이 적용한다.